제265회 임시회 광 진 구 의 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

2022. 10. 24.

복지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변호 2132 2023. 10. 24. 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. 10. 6.

나. 회부일자: 2023. 10. 19.

다. 상정일자: 2023. 10. 23.

2. 안건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장길천 의원

나. 제정이유

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인간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어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 로써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전을 실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~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등(안 제3조)
- 다. 환경교육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라. 위원회의 자문(안 제5조)

- 마. 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(안 제6조)
- 바. 사회환경교육,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(안 제7~9조)
- 사. 화경교육주가(안 제10조)
- 아.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운영, 재정지원(안 제11~12조)
- 자. 재정지원과 실비지급(안 제13~14조)
- 차. 홍보 및 표창(안 제15조)

라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23. 10. 13. ~ 10. 19.) 결과 : 접수된 의견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윤선영)

- 의안번호 제2132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」은 2023년 10월 6일 장길천 의원이 제안하여 2023년 10월 19일 복지 건설위원회에 심사·회부된 안건임
- 본 안건은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
지역구민에게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음

-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시함
 -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
 - ▶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, 민간활동 지원을 하도록 함
 - ▶ 학교의 장은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
 - ▶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
 - ▶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광진구가 추진 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·협력하도록 함
 - 안 제4조는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
 - ▶ 이 밖에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
 - ☞ 위에 명시된 내용 등을 토대로 좀 더 효과적인 정책 수행에 도움이

될 것으로 사료됨

-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으로, 구청장은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」 제18조의 환경 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함
- 안 제6조는 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,

구청장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어린이집과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, 학교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

- 안 제7조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함
 - 1.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・교구의 개발 및 보급
 - 2. 공공기관, 군부대, 기업 및 사회 · 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
 - 3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ㆍ지원
 - 4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
 - 5.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

- 6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안 제8조는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
- 안 제9조는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으로,

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집합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

- 안 제10조는 환경교육주간에 관한 사항으로,

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하도록 함

- ▶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
- 안 제12조는 환경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,

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의 일부를 기초환경교육센터, 사회환경교육기관,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

- 안 제13조는 경비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
- 안 제14조는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안 제15조는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
- 동 조례안 관련 타 자치구의 조례 현황(23.9월 기준)을 살펴보면
 - 서울시 및 21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음
 - ☞ 미제정 자치구 : 광진구, 송파구, 구로구, 노원구
- □ 현재 광진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교육 사업은 다음과 같음

○ 추진근거 :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(책무 등)

○ 사업기간 : 연례반복

○ 사업대상 : 구민

○ 교육인원 : 약 1,000명

○ 교육내용 : 기후변화 원인 및 영향에 대한 이해와 기후위기 대응에

참여하고 실천하는 방법 교육

○ 교육방법 : 환경교육 전문 강사가 관내 학교, 경로당 등 방문 교육



○ 추진방법

교육신청 안내	>	교육 신청/접수	•	방문 교육
환경과		구민 → 환경과		환경 교육 전문 강사

○ 추진실적

(단위 : 명)

구분	합계	2023년 9월	2022년	2021년
교육 참여자	3,026	466	1,200	1,360

▶ 사업비 편성 및 집행현황

(2023. 9월 기준, 단위 : 천원)

구 분	2024년(요구액)	2023년 9월	2022년	2021년
예 산 액	17,000	17,000	16,000	16,000
집 행 액	-	7,201	15,660	16,000
집행률(%)	-	43	98	100

※ 전액 구비

□ 광진구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

▶ EM 친환경교육

구 분 2023년		2022년	2021년		
이론 EM의 활용 / 폐기물 배출 / 기후위기 / 탄소중립				/ 탄소중립	
내용	실습	EM천연비누·가루세제·바디클렌저·탈모예방샴푸 등 친환경제품 제조			
대	상	광진구민(성인) 15명/회			
교육	교육인원 300명 600명 600명		600명		
교육일정		4~7월	(상반기) 4~7월 (하반기) 9~11월	(상반기) 4~6월 (하반기) 9~12월	
교육횟수		20회	40호	40호	
교육방법		대면교육	(상반기) 비대면교육 (하반기) 대면/비대면 병행 ZOOM을 활용한실시		

▶ 기후변화교육

구 분		2023년	2022년	2021년	
교육	이론	기후위기와 극복방법			
내용	실습	천연비누·태양광헬리콥터·에코백만들기 등 친환경제품 제조			
대	상	관내 교육 신청 학급(어린이집 및 초등학교)			
교육인원		166명	600명	760명	
교육일정		7~8월	10~12월	11~12월	
교육횟수		10회	32회	40회	
교육방법		찾아가는 교실(대면교육)			

□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안건은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해 광진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 되었음

- 본 조례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사회환경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, 환경교육센터의 설치·운영과 재정 지원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해 환경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
- 이를 통해 우수한 환경교육 제공 및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
-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○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○ 재석위원 **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**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